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2124호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69호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70호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4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71호 공공하수도(교통 증설) 설치인가 고시 6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72호 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1단계)] 고시 9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11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780호 2023년「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계획 공고 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0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3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73호 국제물류주산업 행정처분 3차 위반-사업정지 60일 공시송달 3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80호 국제물류주산업 행정처분 4차위반-등록취소 공시송달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92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95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1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3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21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검단15호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수정) 3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32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5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36호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복합용지) 공모 공고(안) ... 5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37호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공고 5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4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6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6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5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63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39호 인천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 64

회 람									
--------	--	--	--	--	--	--	--	--	--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41호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2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43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44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9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15호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9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14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17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127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1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36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69호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 문화재의 등록 등),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와 제6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를 지정 사실을 고시 합니다.

2023. 4. 3.

인천광역시장

1. 고시내용

가. 시 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재질	수량/규격	시기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강화 남산 미륵석상	화강암	2점/ 석상1 현존높이85cm, 너비 29cm, 두께 18cm 석상2 현존높이 56cm, 너비 22.5cm, 두께 12cm	근대	국가 (강화군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36번길 62 청수암

나. 지정사유

- 강화 남산 미륵석상(2점)은 단순한 형태의 장승형 미륵불로서 조각 자체가 섬세하지 못하고 투박하여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강화지역 대중들의 염원에 의해 불교와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된 미륵불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 민속문화재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음.

2. 지정일자 : 시보 고시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s://www.cha.go.kr>)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 시도등록문화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70호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 문화재의 등록 등),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와 제6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를 지정 사실을 고시 합니다.

2023. 4. 3.
인천광역시장

1. 고시내용

가. 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지정

명칭	재질	수량/규격	시기	소유자(관리자)	소재지
불랑기	주물	1점/ 총길이 104cm, 통신 52.5cm, 복부 40.6cm, 병부 11.4cm, 무게 100근(67.5kg)	1680년	인천광역시 (인천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나. 지정사유

- 신청 불랑기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에 별다른 손상이 없이 완형으로 전존되어 왔고, 특히 본 유물은 명문이 확인되고 또 같은 명문이 확인 된 불랑기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통해 제작 시기, 배치된 장소, 제작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의 무기 제작체계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등 국방 과학문화재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음.

- 제작 연대와 그 과정을 밝힌 명문이 확인되며 신청 불량기 및 다른 연번의 불량기를 통해 불량기가 제작된 곳은 통제사 영이 있던 통영이고 배치된 곳은 강화였다는 역사성이 명확함(『승정원일기』 에도 확인 됨)
- 조선후기 4호 불량기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며 1680년 이전의 불량기와 비교하여 불량기 조성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음.
- 신청 불량기는 제작시기·인물이 같은 유물이 3점이 있어 신미양요 당시 강화도의 조선군 주력화포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방과학문화재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2. 지정일자 : 고시일(시보 게재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s://www.cha.go.kr>)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시도등록문화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71호

공공하수도(교동 증설) 설치인가 고시

강화군수가 시행하는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1113-5번지 일원 상의 『교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증설)』 과 관련하여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하수과 ☎032-440-3703) 및 강화군청(건설과 ☎032-930-369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4. 3.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성 명: 강화군수
-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관청리, 강화군청)

2. 사업 목적

- 환경오염방지 및 인근 해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기반시설인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역의 수질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1113-5번지
- 면 적: 하수처리시설 3,804.8㎡, 하수관로 430.86m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종류: 하수도
- 명칭 및 용량
 - 명칭: 교동 공공하수도(증설)
 - 용량(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처리시설 위치	강화군 교동면 대릉리 1113-5번지	군유지
처리 용 량	170m ³ /일	
하 수 관 로	D80, 430.86m	

5.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예정 배수구역: 0.603km²
- 예정 하수처리구역: 0.603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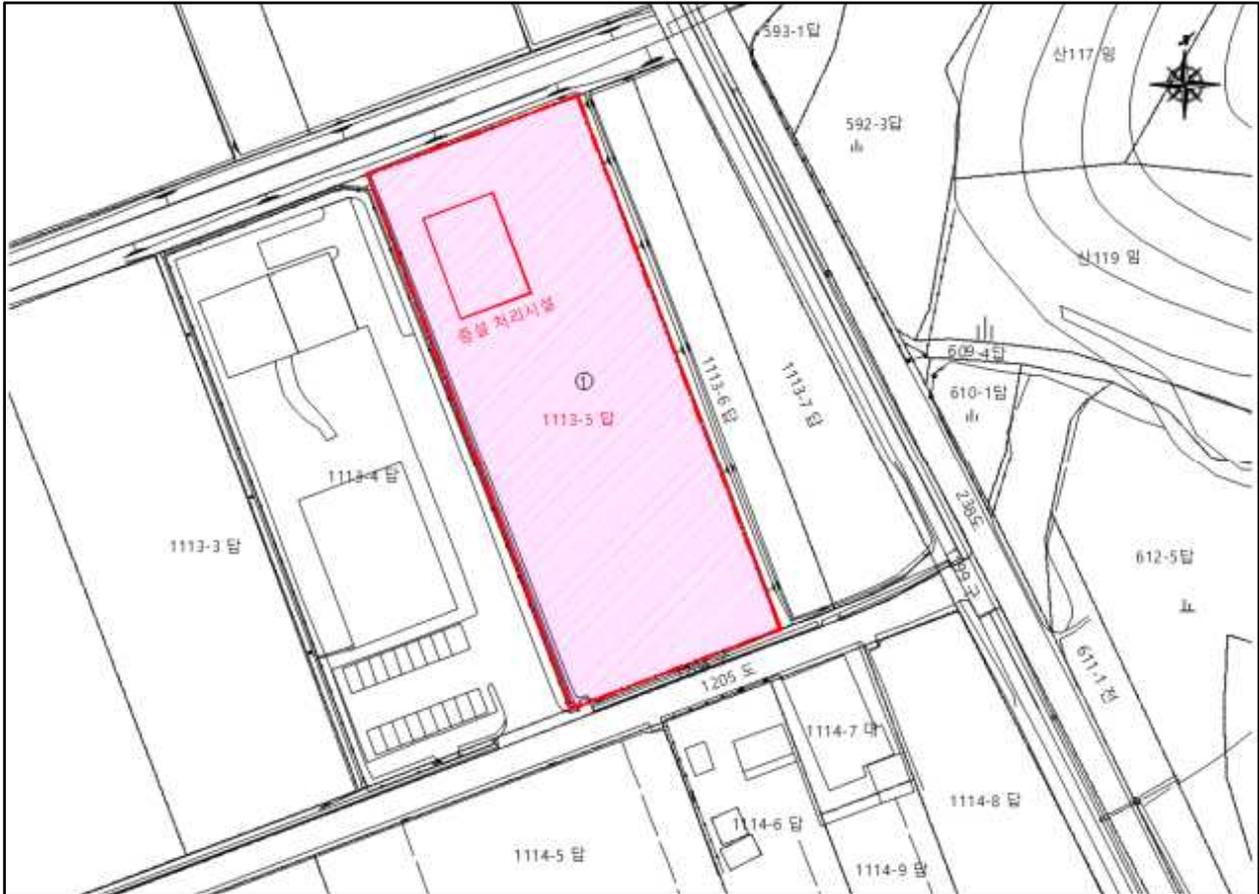
6. 사업시행기간: 2023. 04. ~ 2025. 12. (34개월간)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1	강화군	교동면	대릉리	1113-5	답	3,804.8	3,804.8	강화군	

○ 용지도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72호

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1단계)] 고시

옹진군 북도면 지역 일원에 지방상수도【사업명: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1단계)】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3. 4. 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도화동) 상수도사업본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옹진군 북도면(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
- 사업개요
 - 해저관로(영종도~신도) : D150mm, L=2.3km
 - 연결관로 : D150mm, L=0.1km
 - 가압장 1개소 : 영종도 Q=1,200m³/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구 운서동,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일원
- 사업면적 : 영구 48.15m², 임시 2,484.72m²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급수구역 : 옹진군 북도면 일원
- 급수인구 : 1,234명(1인당 1일 급수량 286 ℓ)
- 급 수 량 : 389㎥/일 (생활용수 352㎥/일, 관광용수 37㎥/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22. 4. 20. ~ 2022. 12. 31.
 - 변경 : 2022. 4. 20. ~ 2023. 6. 30.
- 급수시작예정일 : 2023. 7.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저추진 및 추진기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고
					임시	영구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I. 중구

1	운서동	2508-67	임	11,165.4	564.3	-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 2172-1				추진기지	
2	운서동	2508-101	임	3,221.9	935.7	-							추진기지
3	운서동	2508-101	임	-	6.7	-							추진구간
4	운서동	2508-98	도	101,537.0	3.4	3.1							추진구간
5	운서동	2508-66	임	9,368.0	-	9.2							추진구간

II. 옹진군 신도리

1	신도리	523-61	잡	7205	754.7	-	옹진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추진기지
2	신도리	523-61	잡	7205	29.8	3.7						
3	신도리	523-58	잡	2242	66.86	8.36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추진구간
4	신도리	523-45	도	1454	42.25	5.29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국토교통부				추진구간
5	신도리	524-3	도	392	0.11	-	옹진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용현동)				추진구간

○ 육상가압장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자			비고
					임시	영구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운서동	2818	도	55,902.5	80.9	18.5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13차) 및 실시계획(5차)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I.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3차)

■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IBC- I 파라다이스 2단계 부지내 스마트 레이싱파크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17,257,362.2	100.0	-	17,257,362.2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 계	2,311,003.3	13.4	증)3,917.4	2,314,920.7	13.4	
	상업시설	129,209.2	0.7	-	129,209.2	0.7	
	복합시설	1,830,950.6	10.6	증)3,917.4	1,834,868.0	10.6	
	업무시설	350,843.5	2.0	-	350,843.5	2.0	
산업·물류용지		4,570,223.3	26.5	-	4,570,223.3	26.5	
관광위락 및숙박	숙박시설	83,608.6	0.5	-	83,608.6	0.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8,078,428.6	46.8	감)3,917.4	8,074,511.2	46.8	
	문화시설	67,136.3	0.4	-	67,136.3	0.4	
	공공청사	79,153.5	0.5	-	79,153.5	0.5	
	체육시설	784,037.3	4.5	-	784,037.3	4.5	
	주유소	5,833.2	-	-	5,833.2	-	
	공급처리시설	178,872.0	1.0	-	178,872.0	1.0	
	문화재	63,689.0	0.4	-	63,689.0	0.4	
	도시기반시설 (유수지)	유수 지	1,856,595.9	10.8	-	1,856,595.9	10.8
	공 원		600,637.0	3.5	-	600,637.0	3.5
	녹지 (공공공지)	녹지	1,723,729.4	10.0	-	1,723,729.4	10.0
		공공 공지	74,373.0	0.4	-	74,373.0	0.4
	도 로		1,008,308.3	5.8	감)3,917.4	1,004,390.9	5.8
	광 장		79,109.7	0.5	-	79,109.7	0.5
	주차장		332,282.0	1.9	-	332,282.0	1.9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	1,143,000.0	6.6
공항시설		81,672.0	0.5	-	81,672.0	0.5	
기타용지	유보지	2,214,098.4	12.8	-	2,214,098.4	12.8	
계획미수립지역		-	-	-	-	-	

주1)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9호 (2022. 4.25.)

주2)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다. 세부 변경 내용

○ IBC- I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IBC_ I					비 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면적(m ²)	구성비(%)		면적(m ²)	구성비(%)	
합 계		2,420,119.7	100.0	-	2,420,119.7	100.0	
상업업무 용 지	소 계	292,363.2	12.1	증)3,917.4	296,280.6	12.2	
	상업용지	39,091.2	1.6	-	39,091.2	1.6	
	복합용지	220,079.6	9.1	증)3,917.4	223,997.0	9.2	도로 및 공원 → 복합용지 변경
	업무용지	33,192.4	1.4	-	33,192.4	1.4	
관광위락 및 숙박	숙박용지	83,608.6	3.5	-	83,608.6	3.5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1,904,943.7	78.7	감)3,917.4	1,901,026.3	78.5	
	공공청사	79,153.5	3.3	-	79,153.5	3.3	
	체육시설	784,037.3	32.4	-	784,037.3	32.4	
	주유소	5,833.2	0.2	-	5,833.2	0.2	
	공급처리	57,783.6	2.4	-	57,783.6	2.4	
	유수지	99,863.4	4.1	-	99,863.4	4.1	
	공 원	22,071.2	0.9	-	22,071.2	0.9	공원3-3 위치 변경
	녹 지	450,659.5	18.6	-	450,659.5	18.6	
	공공공지	3,056.0	0.1	-	3,056.0	0.1	
	도 로	342,810.2	14.2	감)3,917.4	338,892.8	14.0	도로3-17 폐지
	광 장	20,679.7	0.9	-	20,679.7	0.9	
	주차장	38,996.1	1.6	-	38,996.1	1.6	
기타용지(유보지)		139,204.2	5.8	-	139,204.2	5.8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및 교통현황 【변경】

○ 교통망 계획

- IBC- I (도로3-17) 폐지 : 연장 261m, 면적 3,917.4m²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6.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 가. 문화시설 【변경없음】
 - 나. 공원·녹지 계획 【변경】
 - IBC- I (공원3-3) 위치 변경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없음】
23. 문화재보호계획 【변경없음】
24. 방재계획 【변경없음】

II.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실시계획 변경(5차)

■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IBC- I 파라다이스 2단계 부지내 스마트 레이싱파크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변경】
 - 가.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개발계획 내용과 동일
4.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없음】
5.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붙임 1>
6.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변경없음】
7.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변경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변경없음】
9.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11. 위치도 【변경없음】
1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변경없음】
1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1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없음】
1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8.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변경없음】
1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2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없음】
2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변경없음】
2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변경없음】
2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2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변경없음】
2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592)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복합도시개발팀(☎032-741-2272)에서 열람가능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현황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자유무역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조서 【변경】

<기정>

구분	계		지구단위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제1산업물류		제2산업물류		IBC-I		IBC-III (INS)		IBC_III-1 (MRO)		
	면적(m ²)	구성비 (%)	면적(m ²)	구성비 (%)	면적(m ²)	구성비 (%)	면적(m ²)	구성비 (%)	면적(m ²)	구성비 (%)	면적(m ²)	구성비 (%)	
합계	17,257,362.2	100.0	2,836,674.3	100.0	2,875,387.0	100.0	2,420,119.7	100.0	4,375,334.6	100.0	4,749,846.6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계	2,311,003.3	13.4	17,731.2	0.6	-	-	292,363.2	12.1	1,781,692.0	40.7	219,216.9	4.6
	상업시설	129,209.2	0.7	-	-	-	-	39,091.2	1.6	90,118.0	2.1	-	-
	복합시설	1,830,950.6	10.6	-	-	-	-	220,079.6	9.1	1,610,871.0	36.8	-	-
	업무시설	350,843.5	2.0	17,731.2	0.6	-	-	33,192.4	1.4	80,703.0	1.8	219,216.9	4.6
산업·물류용지	4,570,223.3	26.5	1,724,652.4	60.8	2,845,570.9	99.0	-	-	-	-	-	-	
관광위락 및 숙박 (숙박시설)	83,608.6	0.5	-	-	-	-	83,608.6	3.5	-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078,428.6	46.8	912,000.4	32.2	29,816.1	1.0	1,904,943.7	78.7	2,593,642.6	59.3	2,638,025.8	55.5
	문화시설	67,136.3	0.4	44,691.3	1.6	-	-	-	-	22,445.0	0.5	-	-
	공공청사	79,153.5	0.5	-	-	-	-	79,153.5	3.3	-	-	-	-
	체육시설	784,037.3	4.5	-	-	-	-	784,037.3	32.4	-	-	-	-
	주유소	5,833.2	-	-	-	-	-	5,833.2	0.2	-	-	-	-
	공급처리시설	178,872.0	1.0	117,919.4	4.2	-	-	57,783.6	2.4	3,169.0	0.1	-	-
	문화재	63,689.0	0.4	63,689.0	2.2	-	-	-	-	-	-	-	-
	유수지	1,856,595.9	10.8	-	-	-	-	99,863.4	4.1	1,505,810.0	34.4	250,922.5	5.3
	공원	600,637.0	3.5	82,305.6	2.9	-	-	22,071.2	0.9	476,301.0	10.9	19,959.2	0.4
	녹지	1,723,729.4	10.0	219,458.3	7.7	-	-	450,659.5	18.6	224,052.0	5.1	829,559.6	17.5
	공공공지	74,373.0	0.4	-	-	-	-	3,056.0	0.1	71,317.0	1.6	-	-
	도로	1,008,308.3	5.8	346,773.9	12.2	-	-	342,810.2	14.2	290,548.6	6.6	28,175.6	0.6
	광장	79,109.7	0.5	-	-	-	-	20,679.7	0.9	-	-	58,430.0	1.2
	주차장	332,282.0	1.9	36,134.7	1.3	-	-	38,996.1	1.6	-	-	257,151.2	5.4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	-	-	-	-	-	-	-	1,143,000.0	24.1
공항시설	81,672.0	0.5	1,028.2	-	29,816.1	1.0	-	-	-	-	50,827.7	1.1	
기타 용지	2,214,098.4	12.8	182,290.3	6.4	-	-	139,204.2	5.8	-	-	1,892,603.9	39.8	

〈변경〉

구분	계		지구단위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제1산업물류		제2산업물류		IBC-I		IBC-III (INS)		IBC-III-1 (MRO)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면적(㎡)	구성비 (%)	
합계	17,257,362.2	100.0	2,836,674.3	100.0	2,875,387.0	100.0	2,420,119.7	100.0	4,375,334.6	100.0	4,749,846.6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계	2,314,920.7	13.4	17,731.2	0.6	-	-	296,280.6	12.2	1,781,692.0	40.7	219,216.9	4.6
	상업시설	129,209.2	0.7	-	-	-	-	39,091.2	1.6	90,118.0	2.1	-	-
	복합시설	1,834,868.0	10.6	-	-	-	-	223,997.0	9.2	1,610,871.0	36.8	-	-
	업무시설	350,843.5	2.0	17,731.2	0.6	-	-	33,192.4	1.4	80,703.0	1.8	219,216.9	4.6
산업·물류용지	4,570,223.3	26.5	1,724,652.4	60.8	2,845,570.9	99.0	-	-	-	-	-	-	
관광위락 및 숙박 (숙박시설)	83,608.6	0.5	-	-	-	-	83,608.6	3.5	-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074,511.2	46.8	912,000.4	32.2	29,816.1	1.0	1,901,026.3	78.5	2,593,642.6	59.3	2,638,025.8	55.5
	문화시설	67,136.3	0.4	44,691.3	1.6	-	-	-	-	22,445.0	0.5	-	-
	공공청사	79,153.5	0.5	-	-	-	-	79,153.5	3.3	-	-	-	-
	체육시설	784,037.3	4.5	-	-	-	-	784,037.3	32.4	-	-	-	-
	주유소	5,833.2	-	-	-	-	-	5,833.2	0.2	-	-	-	-
	공급처리시설	178,872.0	1.0	117,919.4	4.2	-	-	57,783.6	2.4	3,169.0	0.1	-	-
	문화재	63,689.0	0.4	63,689.0	2.2	-	-	-	-	-	-	-	-
	유수지	1,856,595.9	10.8	-	-	-	-	99,863.4	4.1	1,505,810.0	34.4	250,922.5	5.3
	공원	600,637.0	3.5	82,305.6	2.9	-	-	22,071.2	0.9	476,301.0	10.9	19,959.2	0.4
	녹지	1,723,729.4	10.0	219,458.3	7.7	-	-	450,659.5	18.6	224,052.0	5.1	829,559.6	17.5
	공공공지	74,373.0	0.4	-	-	-	-	3,056.0	0.1	71,317.0	1.6	-	-
	도로	1,004,390.9	5.8	346,773.9	12.2	-	-	338,892.8	14.0	290,548.6	6.6	28,175.6	0.6
	광장	79,109.7	0.5	-	-	-	-	20,679.7	0.9	-	-	58,430.0	1.2
	주차장	332,282.0	1.9	36,134.7	1.3	-	-	38,996.1	1.6	-	-	257,151.2	5.4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	-	-	-	-	-	-	-	1,143,000.0	24.1	
공항시설	81,672.0	0.5	1,028.2	-	29,816.1	1.0	-	-	-	-	50,827.7	1.1	
기타 용지	2,214,098.4	12.8	182,290.3	6.4	-	-	139,204.2	5.8	-	-	1,892,603.9	39.8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

- 제1산업물류단지 【변경없음】
- 제1산업물류단지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제2산업물류단지 【변경없음】
- 제2산업물류단지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IBC- I 【변경】

도면표시번호				토지용도	위치 (운서동 일월)	면적(㎡)		용도계획		밀도계획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모번	부번	모번	부번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 (%)					
총 계						1,480,979.7	1,484,897.1											
소 계						39,091.2	39,091.2											
C3-1		C3-1		상업용지	2850-2	11,366.0	11,366.0	상업용지	상업용지	60	350	60	350					
C3-2		C3-2			2855	27,725.2	27,725.2			20	80	20	80		회센터 (공항시설외)			
소 계						220,079.6	223,997.0											
MU3-1		MU3-1		복합용지	2874	177,661.7	164,072.2	복합용지	복합용지	70	300	70	300	파라다이스				
MU3-2		MU3-2			2851-48	30,302.7	59,924.8							파라다이스2단계				
MU3-3					8251-98	12,115.2	-							파라다이스2단계				
소 계						33,192.4	33,192.4											
CO3-1		CO3-1		업무용지	2850-3	7,534.0	7,534.0	업무용지	업무용지	40	400	40	400					
CO3-2		CO3-2			2850-5	4,989.1	4,989.1											
CO3-3		CO3-3			2850-6	6,671.5	6,671.5											
CO3-4		CO3-4			2850-7	7,879.3	7,879.3											
CO3-5		CO3-5			2850-13	6,118.5	6,118.5											
소 계						83,608.6	83,608.6											
TP3-1		H3-1		숙박용지	2850-8	16,327.9	16,327.9	숙박용지	숙박용지	60	350	60	350					
TP3-2		H3-2			2850-1	16,224.1	16,224.1											
TP3-3		H3-3			2850-4	5,475.2	5,475.2											
H3-4		H3-4			2877-1	25,585.3	25,585.3											
H3-5		H3-5			2877-6	19,996.1	19,996.1											
소 계						79,153.5	79,153.5											
공청3-1	1	공청3-1	1	공공청사	2850	45,476.5	45,476.5	공공청사	공공청사	40	150	40	150	정부합동청사				
	2		2		2851-24	2,765.4	2,765.4							종합운동시설관리동				
	3		3		2851-24	5,841.9	5,841.9							어린이집				
	4		4		2851-24	5,892.7	5,892.7							어린이집				
	5		5		2851-33	9,836.1	9,836.1							어린이집				
	6		6		2851-101	9,340.9	9,340.9							어린이집				
소 계						784,037.3	784,037.3											
체3-1	1	체3-1	1	체육시설	2851-24	25,640.4	25,640.4	체육시설	체육시설	10	10	10	10	대운동장				
	2		2		2851-23	17,396.3	17,396.3							40	40	40	40	스카이돔
	3		3		2851-106	23,489.3	23,489.3							40	40	40	40	테니스장
	4		4		2851-24	25,250.6	25,250.6							10	10	10	10	야구장
체3-2		체3-2		3215	602,962.5	602,962.5			10	10	10	10	골프장					
체3-3		체3-3		2877	89,298.2	89,298.2			10	20	10	20	경정장					
주유3-1		주유3-1		주유소	2849	5,833.2	5,833.2	주유소	주유소	40	60	40	60					
소 계						57,783.6	57,783.6											
공급3-1	1	공급3-1	1	공급처리	2850-35	8,210.4	8,210.4	공급처리	공급처리	40	100	40	100					
	2		2		2850-36	47,515.6	47,515.6											
	3		3		2850-9	2,057.6	2,057.6											
소 계						38,996.1	38,996.1											
주3-1		주3-1		주차장	2851-76	33,240.5	33,240.5	주차장	주차장	2	4	2	4					
주3-2		주3-2			2850-15	5,755.6	5,755.6											
소 계						139,204.2	139,204.2											
유보3-1		유보3-1		유보지	2851-101	103,348.1	103,348.1	유보지	유보지	20	80	20	80					
유보3-2		유보3-2			2851-26	20,907.5	20,907.5											
유보3-3		유보3-3			2851-101	14,948.6	14,948.6											

주1)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 IBC-Ⅰ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상업용지【변경없음】

(나) 복합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변경			
MU	MU3-1 ~ MU3-3	MU3-1 ~ MU3-2	용도	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1개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의 50% 초과 ※ 2개 이상의 주용도 계획 : 전체 연면적의 60% 초과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총포판매 제외) / 판매시설 • 기숙사 / 운동시설 / 업무시설(주거형 제외)
			건폐율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건폐율을 적용	
			용적률	• 블록(필지)별 계획밀도 상의 용적률을 적용	
			높이(층)	•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획지의 분할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지 합병 - 연결한 2개 이상의 필지 합병 허용 • 필지 분할 - 분할 후 면적 또는 잔여 면적이 9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없음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의 특성(항공기 운항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계획 				

(다) 업무용지【변경없음】

(라) 숙박용지【변경없음】

(마) 공공청사【변경없음】

(바) 주유소【변경없음】

(사)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아) 주차장【변경없음】

(자) 기타【변경없음】

■ IBC-Ⅲ(INS)【변경없음】

■ IBC-Ⅲ(INS)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IBC-Ⅲ-1(MRO)【변경없음】

■ IBC-Ⅲ-1(MRO)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780호

2023년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계획 공고

인천만의 특색이 담긴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23년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선정대상 : 업력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며 영위중인 소상공인
 - 강화군·옹진군·서구 지역내 30년이상 오래된 가게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별지2> 참조)
- 선정규모 : 10개소 ※4개 권역 구분 순차적 추진(매년 10개소)
 - * ('20년) 중·동구, ('21년) 부평·계양, ('22년) 미추홀·연수·남동, ('23년) 강화·옹진·서구
- 사 업 비 : 139,600천원 [시비 100%]
- 지원내용 : 환경개선비 지원,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 홍보지원 : 인증현판 제공, 굿모닝인천 및 SNS 온라인 홍보 등
-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 가게당 최대 5백만원
 -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 정비하는 범위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4. 3.(월) ~ 5. 8.(월)
 - * 이어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접수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8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구월동) 14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관련증빙서류 일체 등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신청서	1부	<붙임1> 작성
2	신청업체 기술서 / 추천서	1부	<붙임1-1> 작성
3	개인정보이용·수집/제공 동의서	1부	<붙임1-2> 작성
4	증빙자료	해당부수	<붙임1-3> 작성
5	사업자등록증	1부	<붙임1-4> 작성
6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부수	<붙임1-5> 작성

3. 선정절차

○ 3단계로 추진 (①신청 → ②현장확인 → ③선정위원회)

- (1단계) 신청*사항에 대한 서류심사로 적정여부 검토
* 공모를 통한 신청과 군구 추천 병행
- (2단계) 현장확인
- (3단계)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현장평가 일시는 신청업체에 개별 안내 예정

4. 이어가게 선정 평가지표

○ ①역사성, ②성장성 ③지역성 ④희소성 및 차별성 ⑤지속가능성

기준	평가지표	비고
역사성	업력(동일 재화 및 서비스), 가업승계	20%
성장성	매출액증감률, 일자리창출	10%
지역성	지역특성 (지리적·산업적 특성 등) 지역 정서 함유	20%
희소성 및 차별성	기술, 업종의 희소성, 보존가치성, 차별성	30%
지속가능성	경영철학, 발전가능성	20%
가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봉사활동, 자격증/특허 보유, 인증 실적 등	6점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가게를 상속을 받아 운영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증여세신고서, 가업승계 계약서 등) 가업승계와 관련된 서류 제출 시 인정
- 업력은 동일업종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관련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첨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서류는 일체반환 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6. 기타 문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28)

붙임 1. 신청서

- 1-1. 신청업체 (기술서/추천서)
-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3. 증빙자료
- 1-4. 사업자등록증 등
- 1-5.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2.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별지 1> 신청서

업력 30년 이상 “이어가게” 신청서(추천서)

접수번호

* 모든사항 필수 기재

신청인 정보	업 체 명		최초창업일	0000년 0월 0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	업 종	*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기재
	업 체 주 소	ex) 인천광역시 서구 로 000 1층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연락처	(H.P) (TEL)	e-mail	@
	매출실적	(2020년) ____ 백만원 → (2021년) ____ 백만원 → (2022년) ____ 백만원		
	고용증감	(2020년) ____ 명 → (2021년) ____ 명 → (2022년) ____ 백만원		
신청년도 업체현황	업력	상시근로자수	주요사업	업종
	년	명		

※ 이어가게 발굴 및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약속

- ①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 : 예 아니오
- ② 현장평가(조직관리, 재무성과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답할 것 : 예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2023년 이어가게 사업』 참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바, 이에 신청(추천)합니다.

2023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 본 신청서는 <2023년 「인천 이어가게」 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 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되며,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 선정 이후 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 1-1) 신청업체 기술서/ 추천서 1부.
 -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1-3) 증빙서류(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1-5)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1부.

<별지 1-1> 신청업체 기술서 / 추천서 (선택)

신청업체 [기술서 / 추천서]

가
게
에
대
한
기
술
사
항

/

추
천
이
유

○ 사업 경력

- 전체 사업경력 ____년 가운데 현 소재지에서 ____년 운영

○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요소

(※ 역사성, 전문성, 창조성, 예술성, 상징성 등 해당 가게만의 추억을 중
심으로)

-
-

※ 점포의 업력, 역사, 대표자에 대한 소개,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경영방식 및 향후계획 등을 서술

<별지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이어가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인천시가 본인의 가게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인천시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가게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또는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가게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이어가게 사업의 인천시 사업추진 관련하여 인천시 지원사업 안내, 사업홍보관련 SMS 등의 업무수행

■ 가게 정보의 수집항목

가게정보 : 점포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판매품목,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소재지, 가게 현황(가게구분, 개업연도, 운영기간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가게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오래된 가게 사업 및 연관 업무 종료일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이어 가게 업무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 외 사업 홍보 SMS 발송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2. 가게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인천광역시, 해당 지원사업 소관기관(집행기관 포함)

■ 제공받는자의 가게정보 이용 목적

인천광역시의 이어가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가게의 지원정보의 수집·조회 활용

■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정보 항목

가게정보 : 점포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요 판매품목,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소재지, 가게 현황(가게구분, 개업연도, 운영기간 등)

■ 제공받는 자의 가게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인천광역시의 이어가게 사업 지원정책 소멸 또는 폐기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가게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가게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어 가게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가게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동의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1-3> 증빙자료

※ 소상공인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①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시스템 발급)②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보유	표준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단,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 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표준재무제표증명 미보유	※ 아래 서류 중 1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복합 업종의 경우 주된 사업(업태) 판단을 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서를 추가로 제출(3년)해야 하며, 해당서류는 매출증빙이 될 수 없음 ② 사업장현황 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이니 확인)

③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3년)

* 상시근로자는 임원 및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단기근로자) 등을 제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①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연말(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①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

<붙임 1-5> 가산점관련 증빙서류

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봉사활동 증빙서류
- 나눔·봉사활동 확인서

② 업종관련 자격증 및 특허 보유 입증서류

③ 인증 실적

- 부처 및 구에서 공식 운영 중인 지정제도 지정시 증빙서류

* 각 2점, 최대 4점을 넘을 수 없음

예시) 백년가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기타 지자체별 운영 지정제도

<별지2> 신청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3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0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3.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01-122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	전기공 급설비	인천 서구 당하동 717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1-105	아라천, 천마산	7.80	4,932 (철탑23기)	통상산업부고시 제 1995-2호 (1995. 1. 16.)	
변경	-	전기공 급설비	인천 서구 당하동 717	인천 계양구 효성동 123-122	아라천, 천마산	8.06	14,245 (철탑24기, 선하지)	통상산업부고시 제 1995-2호 (1995. 1. 16.)	신설 철탑 3기에 대한 선하지 면적 결정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전기 공급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탑 2기 철거 및 3기 신설 · 연장 : 7.80km→8.06km(증 260m) - 송전선로 : 7.80km→8.06km(증 260m) · 면적 : 4,932㎡→14,245㎡(증9,313㎡) - 철탑부지 : 4,932㎡→5,295㎡(증363㎡) - 선하지 : 8,950㎡(증 8,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54kv 계양~원창 송전선로 중 일부 구간 선형 변경 · 효성구역을 관통하는 기존 철탑 2기를 철거하고, 외곽 지역으로 철탑 3기 신설과 권원확보를 위한 선하지를 추가로 결정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과(☎032-440-1713,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계양구청 도시재생과(☎032-450-5633, 계산새로 88, 4층)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73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3차 위반-사업정지 60일 공시송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3차 위반 행정처분 - 사업정지 60일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처분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1	440	(주)호준종합물류	홍순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종로 9, 904호 (송의동, 로터리빌딩)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12.6.)
2	643	(주)해신해운항공	차에레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남로17번길 26, 305호(용현동, 하나타운)	등록기준미달(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9.5.)

2. 예정된 행정처분 : 3차 위반 - 사업정지 60일(2023.04.24.~2023.06.2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안화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5.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물류정책과 엄용성(032-440-38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80호

공시송달공고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 4차위반-등록취소 공시송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업체에 대하여 4차 위반 행정처분 - 등록취소 공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 년 4 월 3 일

인천광역시장

1. 처분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	법인주소	예정된 행정처분 원인
1	801	(주)지오스	박신광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8-11, 비동 102호(운서동)	등록기준미충족(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6.15.)
2	625	(주)와이에이 치로지스	김은숙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 51, 2층(만석동)	등록기준미충족(보험미갱신) (보험만료일:2021.6.30.)

2. 예정된 행정처분 : 4차 위반 - 등록취소(2023.04.2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미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등록기준 미신고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5. 의견제출 및 기타 문의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물류정책과 엄용성(032-440-38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892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전 청문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상호명: ㈜강산건설산업
2. 대표자: 채종백
3.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6-7, 403호(고잔동, 삼일빌딩)
4.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4-0991)
5.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 미보완
6.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7. 예정된 처분: 등록말소
8. 청문일시: 2023. 5. 2.(화) 14:00
9.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402호(건설심사과)
청문주재: 재난상황과 사무관 계명수
10. 공고기간: 2023. 4. 3.(월) ~ 2023. 4. 17.(월), 14일 간
11. 기타고지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계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440-3742로 문의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23-89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제이오 (대기 제143호)	강득주	2021.3.4.	기술인력 변경	김희환 (공조냉동기계기사)	좌동
				임대열 (화공기사)	좌동
				박승희 (화공기술사) [기술사 대체]	좌동
				임종윤 (대기환경기사)	박광욱 (대기환경기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1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진환경건설(주) (수질 제 120호)	박정규	2019.4.11.	기술인력 변경	임영빈 (공업화학산업기사) [대체 기사]	좌동
				이기영 (토목기사)	좌동
				김진희 (수질환경기사) [대체 기술사]	좌동
				김희근 (수질환경기사)	이진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체 기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21호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검단15호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수정)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검단15호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032-458-7188),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805)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검단15호 공원	근린공원	서구 왕길동 산27-12번지 일원	10,190	감)1,187	9,003	1998.06.12. (인고 제118호)	

2. 변경사유: 대상지 내 자연훼손 최소화 방안 및 공공건축물 BF기준을 적용하여 동선 및 공원시설 현행화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 의견제출: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8)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805)

인천광역시 및 서구 홈페이지

붙임: 공원조성계획도 및 조서

도시관리계획(검단15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27-12 일원)

(시설율 : 9.45%, 건폐율 :

0.05%)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95,261	10,190	1	100	100	14	95,261	9,003	1	47	47	118	감)1,187		
공 원 시 설	기 반 시 설	소계	5,062	5,062	-	-	-	-	3,977	3,977	-	-	-	-	감)1,085
	도로	3,803	3,803	-	-	-	-	3,352	3,352	-	-	-	-	감) 451	
	광장	1,259	1,259	-	-	-	-	625	625	-	-	-	-	감) 634	
	조경시설	730	730	-	-	-	-	2,169	2,169	-	-	-	13	증)1,439	
	휴양시설	977	977	-	-	-	7	956	956	-	-	-	30	감) 21	
	운동시설	1,986	1,986	-	-	-	5	596	596	-	-	-	-	감)1,390	
	교양시설	788	788	-	-	-	-	736	736	-	-	-	-	감) 52	
	편익시설	247	247	-	-	-	2	569	569	1	47	47	3	증) 322	
관리시설	400	400	1	100	100	-	-	-	-	-	-	72	감) 400		
녹지 / 기타	85,071	-	-	-	-	-	86,258	-	-	-	-	-	증)1,187		
시설율(% (법정40%이하)	(10,190 ÷ 95,261) × 100 = 10.70%						(9,003 ÷ 95,261) × 100 = 9.45%								
건폐율(% (법정15%)	(100 ÷ 95,261) × 100 = 0.1%						(47 ÷ 95,261) × 100 = 0.05%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동수(동)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합계			95,261	10,190	1	100	100	14		95,261	9,003	1	47	47	118	감)1,187
도로 및 광장	계	-	5,062	5,062	-	-	-	-	-	3,977	3,977	-	-	-	-	감)1,085
	도로	-	3,803	3,803	-	-	-	-	-	3,352	3,352	-	-	-	-	
	광장	가	1,259	1,259	-	-	-	-	가	625	625	-	-	-	-	
	광장1	가-1	(346)	(346)	-	-	-	-	가-1	(100)	(100)	-	-	-	-	
	광장2	가-2	(427)	(427)	-	-	-	-	가-2	(73)	(73)	-	-	-	-	
	광장3	가-3	(136)	(136)	-	-	-	-	가-3	(373)	(373)	-	-	-	-	
광장4	가-4	(350)	(350)	-	-	-	-	가-4	(79)	(79)	-	-	-	-		
조경 시설	계	-	730	730	-	-	-	-	-	2,169	2,169	-	-	-	13	증) 1,439
	조경공간	나	730	730	-	-	-	-	나	2,169	2,169	-	-	-	-	
	들꽃원	나-1	(593)	(593)	-	-	-	-	나-1	(346)	(346)	-	-	-	-	
	잔디밭	나-2	(137)	(137)	-	-	-	-	나-2	(268)	(268)	-	-	-	-	
	화계정원	-	-	-	-	-	-	-	나-3	(633)	(633)	-	-	-	-	
	잔디언덕	-	-	-	-	-	-	-	나-4	(442)	(442)	-	-	-	-	
	향기원	-	-	-	-	-	-	-	나-5	(480)	(480)	-	-	-	-	
	입구가벽	-	-	-	-	-	-	-	①	-	-	-	-	-	(1)	
	조경옹벽	-	-	-	-	-	-	-	②	-	-	-	-	-	(7)	
장미아치	-	-	-	-	-	-	-	③	-	-	-	-	-	(5)		
휴양 시설	계	-	977	977	-	-	-	7	-	956	956	-	-	-	30	감) 21
	쉼터	다	977	977	-	-	-	-	다	956	956	-	-	-	-	
	쉼터1	다-1	(273)	(273)	-	-	-	-	다-1	(246)	(246)	-	-	-	-	
	쉼터2	다-2	(50)	(50)	-	-	-	-	다-2	(166)	(166)	-	-	-	-	
	쉼터3	다-3	(125)	(125)	-	-	-	-	다-3	(236)	(236)	-	-	-	-	
	쉼터4	다-4	(50)	(50)	-	-	-	-	다-4	(106)	(106)	-	-	-	-	
	쉼터5	다-5	(116)	(116)	-	-	-	-	다-5	(153)	(153)	-	-	-	-	
	쉼터6	다-6	(363)	(363)	-	-	-	-	다-6	(31)	(31)	-	-	-	-	
	쉼터7	-	-	-	-	-	-	-	다-7	(18)	(18)	-	-	-	-	
파고라	①	-	-	-	-	-	(7)	④	-	-	-	-	-	(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m ²)	연적(m ²)					동수(동)	바닥면적(m ²)	연적(m ²)		
	등의자	-	-	-	-	-	-	-	⑤	-	-	-	-	-	(17)	
	통나무의자	-	-	-	-	-	-	-	⑥	-	-	-	-	-	(9)	
운동 시설	계	-	1,986	1,986	-	-	-	5	-	596	596	-	-	-	-	감)1,390
	다목적구장	마	1,743	1,743	-	-	-	-	마	596	596	-	-	-	-	
	다목적구장1	마-1	(1,278)	(1,278)	-	-	-	-	마-1	(409)	(409)	-	-	-	-	
	다목적구장2	마-2	(465)	(465)	-	-	-	-	마-2	(187)	(187)	-	-	-	-	
	체력단련장	바	243	243	-	-	-	-	-	-	-	-	-	-	-	
	체력단련시설	②	-	-	-	-	-	(5)	-	-	-	-	-	-	-	
교양 시설	계	-	788	788	-	-	-	-	-	736	736	-	-	-	-	감) 52
	숲학습원	사	788	788	-	-	-	-	사	736	736	-	-	-	-	위치변경
편익 시설	계	-	247	247	-	-	-	2	-	569	569	1	47	47	3	증) 322
	주차장	아	197	197	-	-	-	-	아	224	224	-	-	-	-	6면
	전망대	자	50	50	-	-	-	-	자	145	145	-	-	-	-	
	화장실	-	-	-	-	-	-	-	차	200	200	1	47	47	-	
	전망대정자	③	-	-	-	-	-	(1)	⑦	-	-	-	-	-	(1)	
	자전거보관대	④	-	-	-	-	-	(1)	⑧	-	-	-	-	-	(2)	
관리 시설	계	-	400	400	1	100	100	-	-	-	-	-	-	-	72	감) 400
	관리사무소	차	400	400	1	100	100	-	-	-	-	-	-	-	-	
	볼라드	-	-	-	-	-	-	-	⑨	-	-	-	-	-	(9)	
	CCTV카메라	-	-	-	-	-	-	-	⑩	-	-	-	-	-	(9)	
	공원등	-	-	-	-	-	-	-	⑪	-	-	-	-	-	(37)	
	안내판	-	-	-	-	-	-	-	⑫	-	-	-	-	-	(17)	
녹지			85,071							86,258						증)1,187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기정		1,760	3,803	-	-	-	
			변경		1,720	3,352	-	-	-	
소 계			기정		252	787	-	-	-	
			변경		219	779	-	-	-	
기정	소로	3	1	4	31	124	진입로	서측계	다목적구장1	
변경	소로	3	1	6	17	105	진입로	서측계	주차장	
기정	소로	3	2	3	99	297	진입로	남측계	소로3-3	
변경	소로	3	2	3.5	106	371	연결로	광장2	광장3	
기정	소로	3	3	3	68	204	연결로	남측계	동측계	
변경	소로	3	3	3	96	303	진입로	광장4	산책로9	
기정	소로	3	4	3	13	39	연결로	소로3-3	쉼터3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5	3	15	45	진입로	남동측계	소로3-3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6	3	26	78	진입로	남동측계	소로3-3	
폐지	-	-	-	-	-	-	-	-	-	
소 계			기정		1,508	3,016	-	-	-	
			변경		1,501	2,573	-	-	-	
기정	산책로	-	1	2	39	78	산책로	관리사무소	쉼터1	
변경	산책로	-	1	2.5	63	158	진입로	광장1	쉼터1	
기정	산책로	-	2	2	153	306	산책로	다목적구장1	다목적구장1	
변경	산책로	-	2	2	4	8	연결로	소로3-2	다목적구장1	
기정	산책로	-	3	2	302	604	산책로	산책로2	서측계	
변경	산책로	-	3	2	31	77	연결로	쉼터1	다목적구장1	
기정	산책로	-	4	2	119	238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3	
변경	산책로	-	4	2	26	51	산책로	쉼터2	쉼터3	
기정	산책로	-	5	2	305	610	산책로	광장2	산책로3	
변경	산책로	-	5	2	7	13	연결로	소로3-2	쉼터3	
기정	산책로	-	6	2	334	668	산책로	소로3-2	산책로3	
변경	산책로	-	6	2	5	10	연결로	소로3-2	쉼터3	
기정	산책로	-	7	2	256	512	산책로	산책로3	소로3-1	
변경	산책로	-	7	2	6	12	연결로	소로3-2	쉼터2	
신설	산책로	-	8	2	8	16	연결로	소로3-2	잔디밭	

구분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m ²)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산책로	-	9	1.5	695	1,043	산책로	광장2	소로3-3	
신설	산책로	-	10	2	252	505	산책로	광장3	전망대	
신설	산책로	-	11	2	35	70	산책로	전망대	쉼터4	
신설	산책로	-	12	1.5	191	296	산책로	산책로9	산책로11	
신설	산책로	-	13	1.2	56	70	산책로	소로3-3	산책로9	
신설	산책로	-	14	2	29	58	산책로	쉼터5	쉼터6	
신설	산책로	-	15	2	34	67	산책로	쉼터6	쉼터7	
신설	산책로	-	16	2	59	119	산책로	쉼터7	전망대	

조성계획총괄도

검단15호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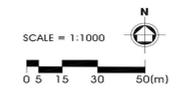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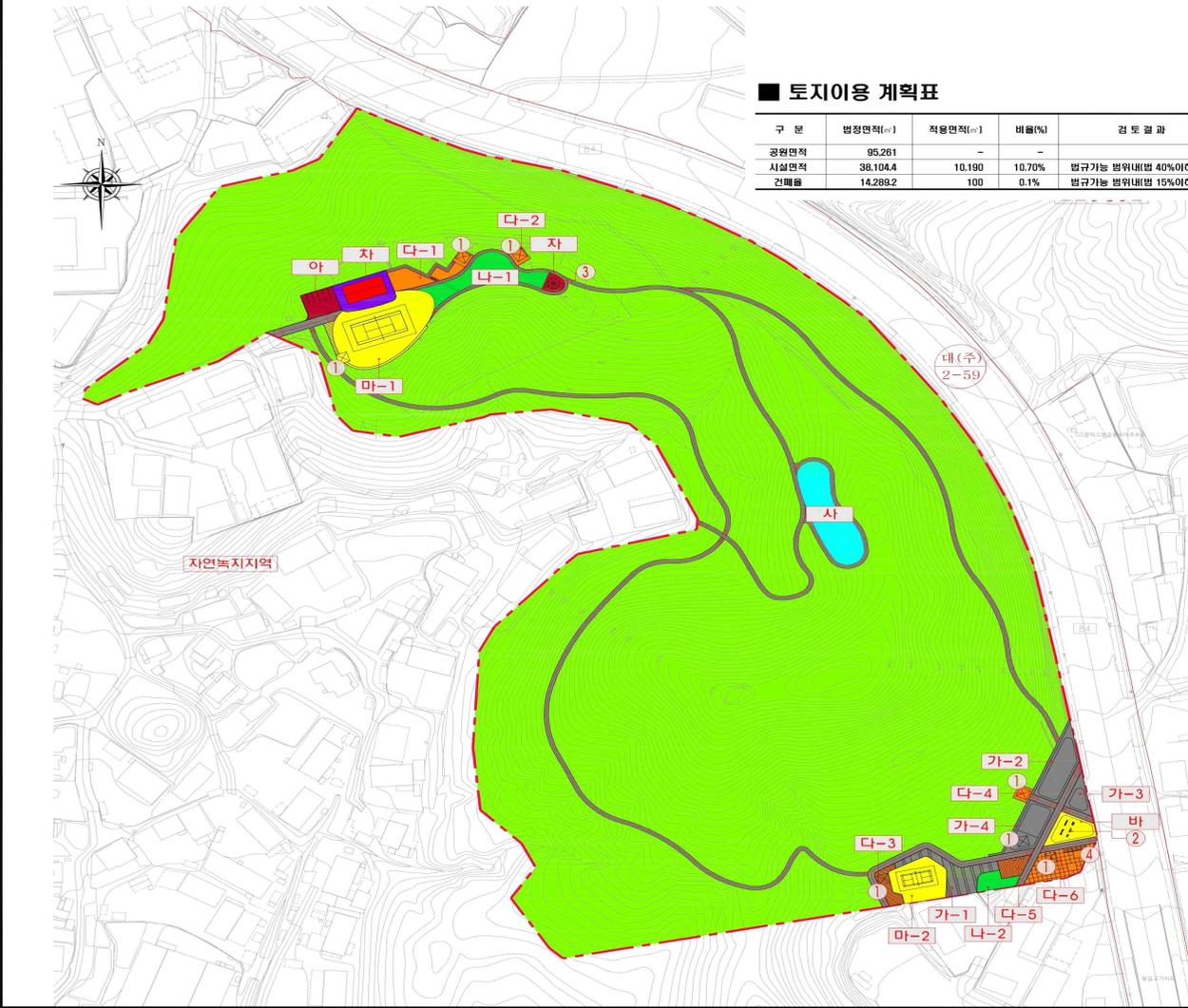
기정

토지이용 계획표

구분	범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95,261	-	-	
시설면적	38,104.4	10,190	10.70%	법규가능 범위내(범 40%이내)
건물면적	14,289.2	100	0.1%	법규가능 범위내(범 15%이내)

총괄수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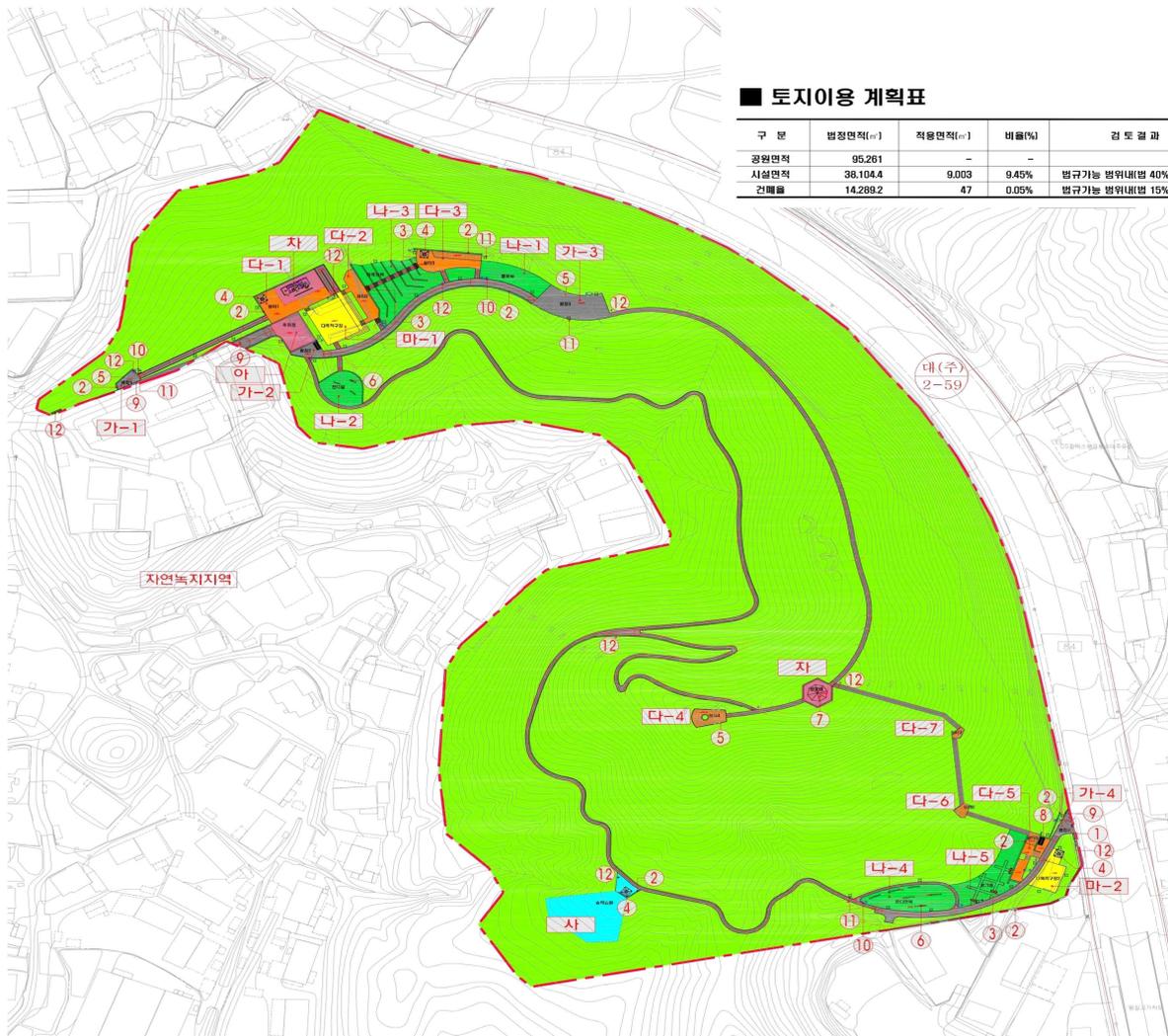
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			공작물	비고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95,261	100	100	14	
공원시설합계			10,190	-	-	14	10.70
도로및 광장	소계		5,062	-	-	-	
	도로	도로	3,803	-	-	-	
	가	광장	1,259	-	-	-	
	가-1	광장 1	(346)	-	-	-	
	가-2	광장 2	(427)	-	-	-	
조경시설	소계		730	-	-	-	
	나	조경공간	730	-	-	-	
	나-1	뜰꽃원	(593)	-	-	-	
	나-2	잔디밭	(137)	-	-	-	
	소계		977	-	-	7	
휴양시설	다	쉼터	977	-	-	-	
	다-1	쉼터 1	(273)	-	-	-	
	다-2	쉼터 2	(50)	-	-	-	
	다-3	쉼터 3	(125)	-	-	-	
	다-4	쉼터 4	(50)	-	-	-	
	다-5	쉼터 5	(116)	-	-	-	
	다-6	쉼터 6	(363)	-	-	-	
①	파고라	-	-	-	7		
소계		1,986	-	-	5		
운동시설	마	다목적구장	1,743	-	-	-	
	마-1	다목적구장1	(1,278)	-	-	-	
	마-2	다목적구장2	(465)	-	-	-	
바	체력단련장	243	-	-	-		
②	체력단련시설	-	-	-	5		
소계		788	-	-	-		
교양시설	사	술학습원	788	-	-	-	
소계		247	-	-	2		
편의시설	아	주차장	197	-	-	-	6면
	자	전망대	50	-	-	-	
	③	전망대정자	-	-	-	1	
	④	자전거보관대	-	-	-	1	
소계		400	100	100	-		
관리시설	차	관리사무소	400	100	100	-	
녹지	소계		85,071	-	-	-	녹지율89.30%



조성계획총괄도

검단15호공원

변경



토지이용 계획표

구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95,261	-	-	
시설면적	38,104.4	9,009	9.45%	법규가능 범위내(변 40%이내)
건폐율	14,289.2	47	0.05%	법규가능 범위내(변 15%이내)

총괄수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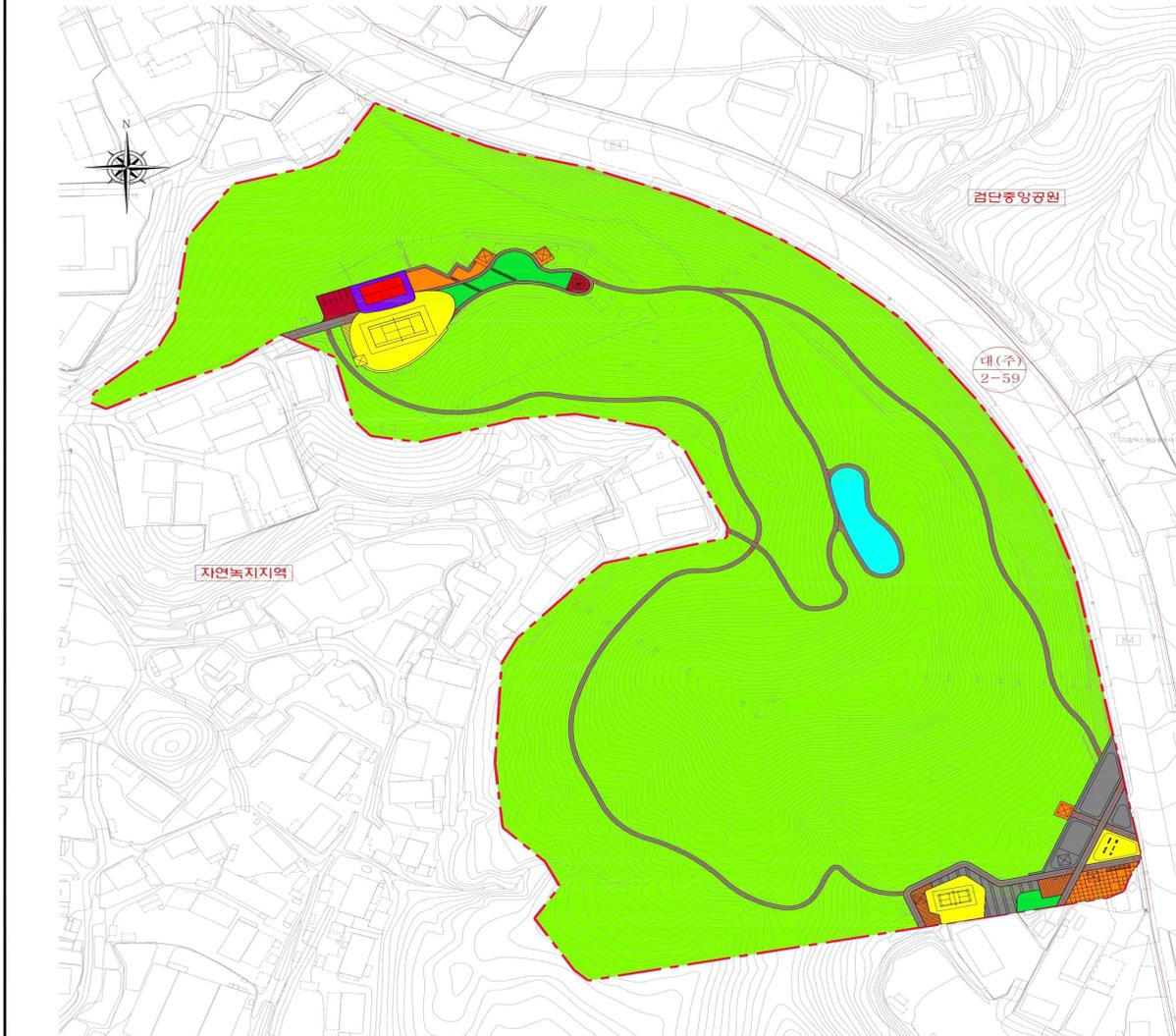
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		공적률	비고
			부지면적	비면적		
합계			95,261	47	47	118
공원시설합계			9,009	-	-	118
소계			3,977	-	-	9.45%
도로 및 경장	도로	도로	3,352	-	-	-
	기	경장	625	-	-	-
	가-1	경장 1	(110)	-	-	-
	가-2	경장 2	(73)	-	-	-
	가-3	경장 3	(373)	-	-	-
가-4	경장 4	(70)	-	-	-	
소계			-	-	-	13
조경시설	나	조경공간	2,169	-	-	-
	나-1	물결원	(346)	-	-	-
	나-2	잔디밭	(268)	-	-	-
	나-3	외계정원	(633)	-	-	-
	나-4	잔디연석	(442)	-	-	-
	나-5	왕기원	(480)	-	-	-
	①	왕기원벽	-	-	-	1
	②	조경용벽	-	-	-	7
	③	장미여지	-	-	-	5
	소계			956	-	-
휴양시설	다	쉼터	956	-	-	-
	다-1	쉼터 1	(246)	-	-	-
	다-2	쉼터 2	(166)	-	-	-
	다-3	쉼터 3	(236)	-	-	-
	다-4	쉼터 4	(106)	-	-	-
	다-5	쉼터 5	(153)	-	-	-
	다-6	쉼터 6	(31)	-	-	-
	다-7	쉼터 7	(18)	-	-	-
④	피코라	-	-	-	4	
⑤	봉의자	-	-	-	17	
⑥	봉나무의자	-	-	-	9	
소계			596	-	-	-
운동시설	마	다목적구장	596	-	-	-
	마-1	다목적구장1	(409)	-	-	-
	마-2	다목적구장2	(187)	-	-	-
소계			796	-	-	-
교양시설	사	송학습원	796	-	-	-
	소계			569	47	47
편의시설	아	주차장	224	-	-	-
	자	친양대	145	-	-	-
	차	친양상	200	47	47	-
	⑦	친양대정자	-	-	-	1
	⑧	자연거보관대	-	-	-	2
소계			-	-	-	72
관리시설	⑨	블라드	-	-	-	9
	⑩	CCTV	-	-	-	9
	⑪	공명등	-	-	-	37
	⑫	안내판	-	-	-	17
소계			88,258	-	-	녹지율 90.55%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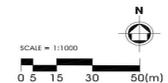
검단15호공원

기정



■ 토지이용 계획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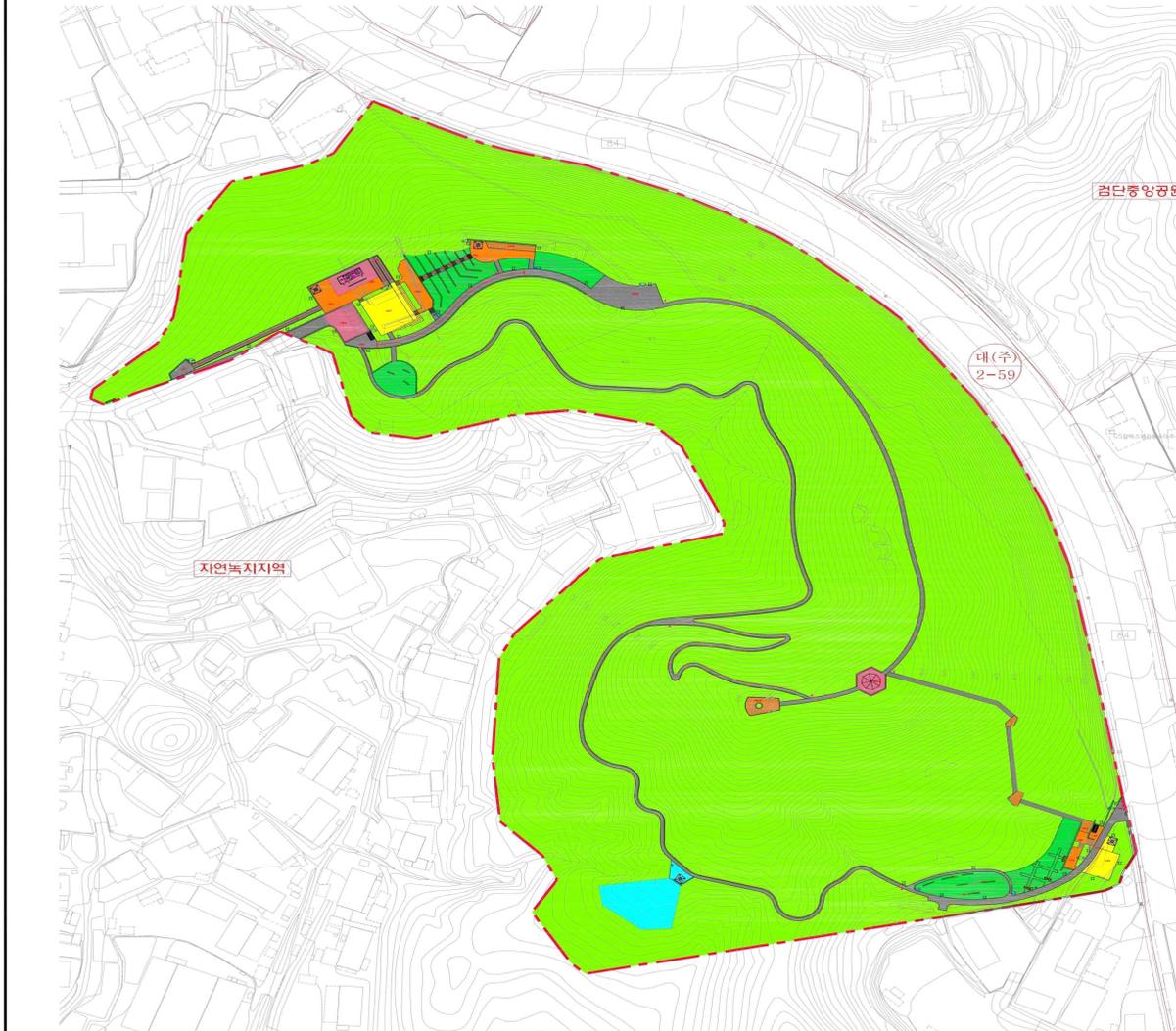
구분	시설지명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95,261	100.0	
시설합계		10,190	10.70	
	도로 및 광장	5,062	5.31	
	조경시설	730	0.77	
	휴양시설	977	1.03	
	유희시설	-	-	
	운동시설	1,986	2.08	
	교양시설	788	0.83	
	편익시설	247	0.26	
	관리시설	400	0.42	
	농업시설	-	-	
	농지	85,071	89.30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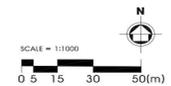
검단15호공원

변경



■ 토지이용 계획표

구분	시설지명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95,261	100.0	
시설합계		9,003	9.45	
	도로 및 광장	3,977	4.17	
	조경시설	2,169	2.28	
	휴양시설	956	1.00	
	운동시설	596	0.63	
	교양시설	736	0.77	
	편의시설	569	0.60	
	관리시설	-	-	
	녹지	86,258	90.55	



동선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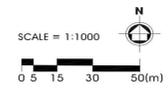
검단15호공원

기정



■ 동선계획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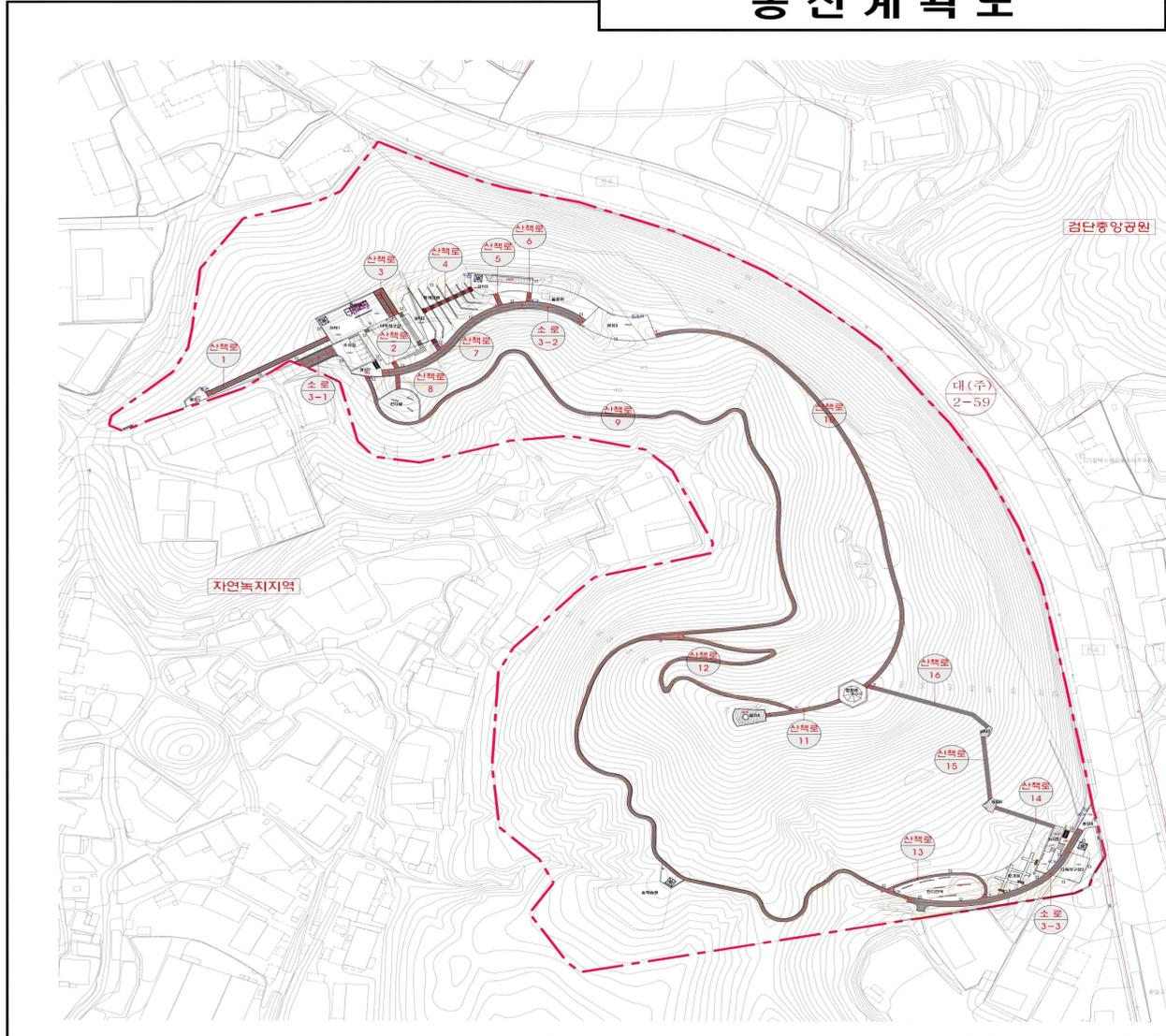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시점	종점	비고
총계	-	-	-	-	1,760	3,803	-	-	-	-
소계	-	-	-	-	252	787	-	-	-	-
기정	소로	3	1	4	31	124	전입로	사죽계	다목적구장1	
기정	소로	3	2	3	99	287	전입로	남죽계	소로3-3	
기정	소로	3	3	3	68	204	연결로	남죽계	동죽계	
기정	소로	3	4	3	13	39	연결로	소로3-3	원티3	
기정	소로	3	5	3	15	45	전입로	남동죽계	소로3-3	
기정	소로	3	6	3	26	78	전입로	남동죽계	소로3-3	
소계	-	-	-	-	1,508	3,016	-	-	-	-
기정	산책로	-	1	2	39	78	산책로	관리사무소	원티1	
기정	산책로	-	2	2	153	306	산책로	다목적구장1	다목적구장1	
변경	산책로	-	3	2	302	604	산책로	산책로2	사죽계	
변경	산책로	-	4	2	119	238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3	
변경	산책로	-	5	2	305	610	산책로	광장2	산책로3	
변경	산책로	-	6	2	334	668	산책로	소로3-2	산책로3	
변경	산책로	-	7	2	256	512	산책로	산책로3	소로3-1	



동선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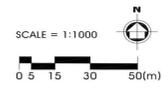
검단15호공원

변경



■ 동선계획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시점	종점	비고
총계	-	-	-	-	1,720	3,352	-	-	-	-
소계	-	-	-	-	219	779	-	-	-	-
변경 소로	3	1	6	17	105	전입로	시죽계	주자장	-	-
변경 소로	3	2	3.5	106	371	연결로	광장 2	광장 3	-	-
변경 소로	3	3	3.0	96	303	전입로	광장 4	산책로 9	-	-
소계	-	-	-	-	1,501	2,573	-	-	-	-
변경 산책로	-	1	2.5	63	158	전입로	광장 1	원타 1	-	-
변경 산책로	-	2	2	4	8	연결로	소로3-2	다목적구장1	-	-
변경 산책로	-	3	2	31	77	연결로	원타1	다목적구장1	-	-
변경 산책로	-	4	2	26	51	산책로	원타2	원타3	-	-
변경 산책로	-	5	2	7	13	연결로	소로3-2	원타3	-	-
변경 산책로	-	6	2	5	10	연결로	소로3-2	원타3	-	-
변경 산책로	-	7	2	6	12	연결로	소로3-2	원타2	-	-
신설 산책로	-	8	2	8	16	연결로	소로3-2	잔디밭	-	-
신설 산책로	-	9	1.5	695	1,043	산책로	광장2	소로3-3	-	-
신설 산책로	-	10	2	252	505	산책로	광장3	전망대	-	-
신설 산책로	-	11	2	35	70	산책로	전망대	원타 4	-	-
신설 산책로	-	12	1.5	191	296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11	-	-
신설 산책로	-	13	1.2	56	70	산책로	소로3-3	산책로 9	-	-
신설 산책로	-	14	2	29	58	산책로	원타 5	원타 6	-	-
신설 산책로	-	15	2	34	67	산책로	원타 6	원타 7	-	-
신설 산책로	-	16	2	59	119	산책로	원타 7	전망대	-	-



시설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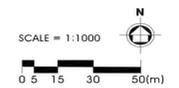
검단15호공원

기정



■ 총괄수량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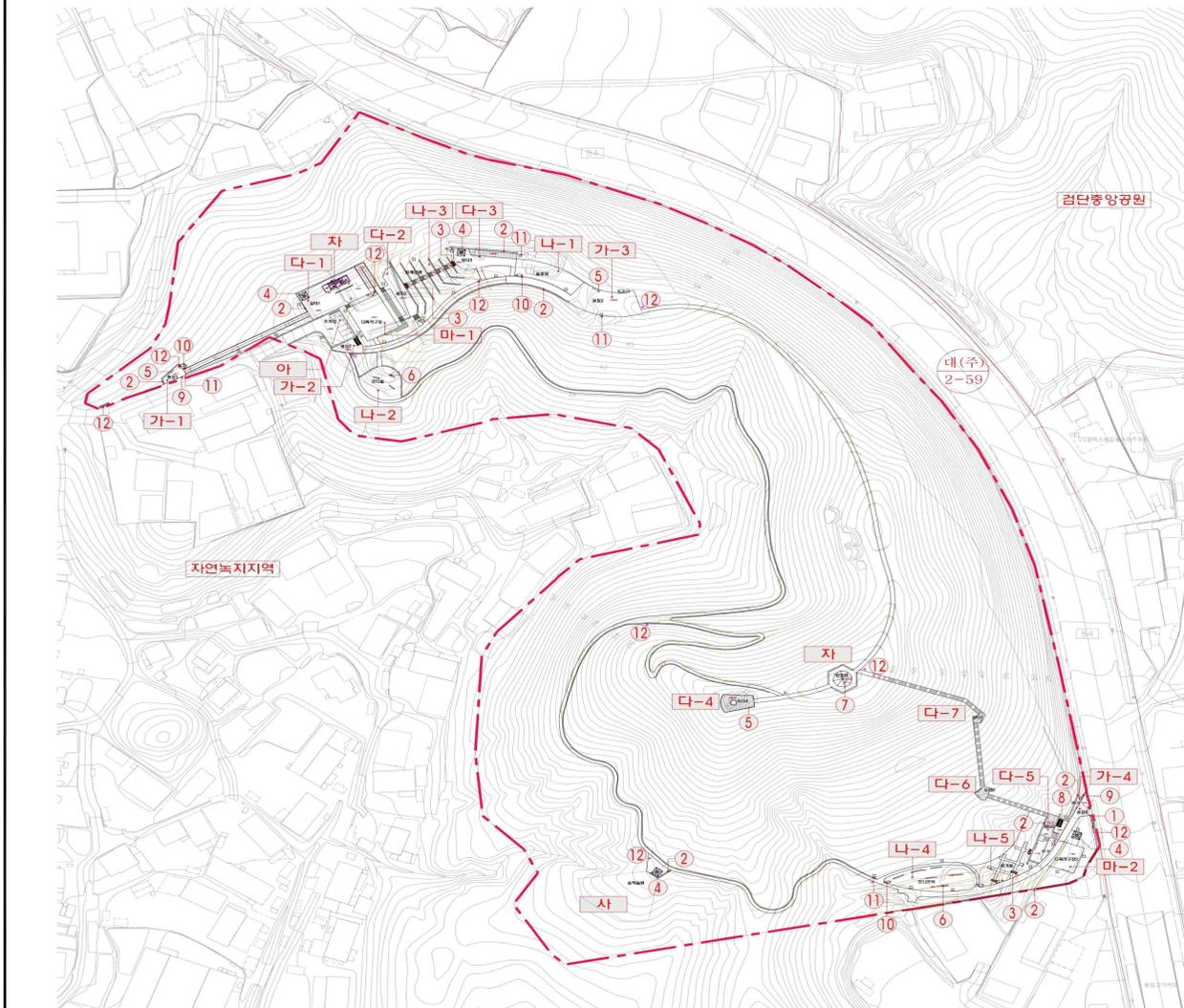
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m ²]			공작물	비고
			부지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95,261	100	100	14	
공원시설합계			10,190	-	-	14	10.70
도로및 광장	소계		5,062	-	-	-	
	도로		3,803	-	-	-	
	가 광장 1		1,259	-	-	-	
	가-1 광장 1		(346)	-	-	-	
	가-2 광장 2		(427)	-	-	-	
조경시설	소계		730	-	-	-	
	나 조경공간		730	-	-	-	
	나-1 들꽃원		(693)	-	-	-	
	나-2 잔디밭		(137)	-	-	-	
휴양시설	소계		977	-	-	7	
	다 쉼터		977	-	-	-	
	다-1 쉼터 1		(273)	-	-	-	
	다-2 쉼터 2		(50)	-	-	-	
	다-3 쉼터 3		(125)	-	-	-	
	다-4 쉼터 4		(50)	-	-	-	
	다-5 쉼터 5		(116)	-	-	-	
다-6 쉼터 6		(363)	-	-	-		
① 피고라		-	-	-	-	7	
운동시설	소계		1,986	-	-	5	
	마 다목적구장		1,743	-	-	-	
	마-1 다목적구장1		(1,278)	-	-	-	
	마-2 다목적구장2		(465)	-	-	-	
	바 체력단련장		243	-	-	-	
② 체력단련시설		-	-	-	-	5	
교양시설	소계		788	-	-	-	
	사 숲학습원		788	-	-	-	
편익시설	소계		247	-	-	2	
	아 주차장		197	-	-	-	6면
	자 전망대		50	-	-	-	
	③ 전망대장자		-	-	-	-	1
④ 자전거보관대		-	-	-	-	1	
관리시설	소계		400	100	100	-	
	차 관리사무소		400	100	100	-	
녹지	소계		85,071				녹지율89.30%



시설배치계획도

검단15호공원

변경



총괄수량표

구분	기호	시설명	면적(㎡)		공작별	비고	
			부지면적	바닥면적			
합계			95,261	47	47	118	
공원시설	합계		9,003	-	-	118	9.45%
도로 및 광장	소계		3,977	-	-	-	
	도로	도로	3,352	-	-	-	
	가	광장 1	625	-	-	-	
	가-1	광장 1	(1100)	-	-	-	
	가-2	광장 2	(73)	-	-	-	
조경시설	소계		-	-	-	13	
	나	조경공간	2,169	-	-	-	
	나-1	분수원	(346)	-	-	-	
	나-2	전디밭	(268)	-	-	-	
	나-3	원계정원	(633)	-	-	-	
휴양시설	소계		956	-	-	30	
	다	쉼터	956	-	-	-	
	다-1	쉼터 1	(246)	-	-	-	
	다-2	쉼터 2	(166)	-	-	-	
	다-3	쉼터 3	(236)	-	-	-	
운동시설	소계		596	-	-	-	
	마	다목적구장	596	-	-	-	
	마-1	다목적구장1	(409)	-	-	-	
	마-2	다목적구장2	(187)	-	-	-	
	교양시설	소계		736	-	-	-
편의시설	소계		569	47	47	3	
	아	주차장	224	-	-	-	6면
	자	전망대	145	-	-	-	
	자	원장실	200	47	47	-	
	7	전망대정자	-	-	-	1	
관리시설	소계		-	-	-	72	
	8	블라드	-	-	-	9	
	10	CCTV	-	-	-	9	
	11	공명등	-	-	-	37	
	12	안내판	-	-	-	17	
총계	소계		86,258	-	-	녹지율 90.5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32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공고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도로의 종류	광역시도	노 선 명	12-2호선
공사 종류	대로3-23호선 도시계획시설 완화차로 설치공사(광역시도12-2호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사업시행자 및 주소	의료법인 나사렛 의료재단 이강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8(동춘동)		
공사 목적	복합시설용지에 한방병원과 기숙사를 조성하고 부지에 접한 도시계획시설 대로3-23호선에 완화차로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함.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논현동685번지 (은봉로 L = 133m, B = 25.0 ~ 31.0m)		
착 수 일	2023년 4월 3일 (당초 2021.10. 5.)	준공예정일	2023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36호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복합용지) 공모 공고(안)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복합용지)」을 공모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생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부평구 청천동·십정동, 서구 가좌동,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
- 면적 : 1,813,136㎡(부평 609,361㎡, 주안 1,176,829㎡, 추가편입 26,946㎡)
- 사업기간 : 2021~2028년
- 사업방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2. 공모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주변 연접(100m 내) 지역 (위치 미정)
 - 면적 : 부평 22,300㎡, 주안 68,700㎡
- ※ 총량관리,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내 포함

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및 주변 연접(100m 내) 토지소유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자
 - ※ 응모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응모기간 : 2023.04.03.(월) ~ 2023.07.03.(월) 18:00 (92일간)
 - ※ 접수일은 응모기간 종료일(2023.07.03.)로 한다.
- 사업기간 : 응모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예정 사업기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은 협약으로 정하되 사업완료 예정기간은 2028년까지로 한다.

4. 재생사업지구계획안의 평가·심사 계획

-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5. 공모 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 협약

6. 재생사업지구계획안 작성지침 : 붙임 “공모지침서” 참고

7.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15층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모지침서” 참조
-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입지과(☎032-440-4672, 467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37호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공고

우리 市 지역서점의 신뢰도 향상 및 서점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전수조사」를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4.

인천광역시장

1. 추진 개요

가. 시 행 일 : 2023. 4. 3. ~ 6. 30.

나. 조사주최 :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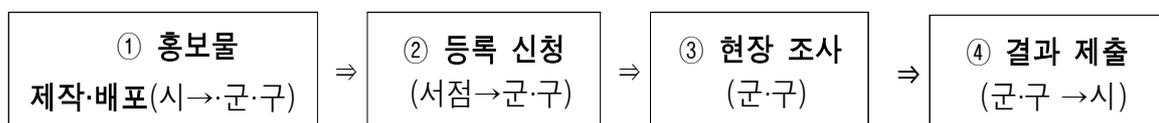
다. 조사주관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지역서점 담당

라. 조사대상 : 관내 서점 중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서점

마. 등록기준 :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

- ① 사업자등록증에 서적으로 등록된 업체
- ② 외부에 서점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매장 하나에 한 사업자만 인정됨(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과 일치)
- ③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해당서점*
* 인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경영 중인 서점
- ④ 현장매출 증빙(신용카드매출확인서 등)이 가능한 업체

바. 지역서점 등록절차



① 홍보물 제작·배포 : 시·군·구 관련부서, 공공·작은 도서관 등

② 등록신청 : 서점에서 해당 군·구에 신청서 제출(우편, FAX, Email)

※ 등록서점 준수사항 : 폐업 및 개업 시 자진 신고

- ③ 현장실사 : 외부·내부 현장 및 현장매출 확인(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등)
 ④ 결과 제출 : 등록기준에 부합된 서점현황 조사 후 결과 제출

※ 도서구입 및 관련사업 계약 당시 등록사항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2. 등록 효과

가. 우리시 및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등록서점에서 우선구매
 나. 수요기관에 검증된 서점 정보제공으로 구매계약 신뢰성 제고
 다. 관외서점이나 서적업으로 등록된 페이퍼컴퍼니의 계약체결 방지

3. 신청 방법

가. 신청 구비서류(붙임1~2 참조)

- ①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등록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매장 외부·내부 사진 및 현장매출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등)는 현장실사 시 확인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지역서점 담당부서

구 분	주 소	담당자	전화번호 (032)	이메일	팩스 (032)
강 화 군	(23032)인천 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131 강화군청 지혜의숲도서관 <자치교육과>	김동현	934-8270	cyko2@korea.kr	930-3836
용 진 군	(22193)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용진군청 <관광문화진흥과>	김소리	899-2262	ksr1446@korea.kr	899-2219
중 구	(22315)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중구청 <문화관광과>	안재두	760-6446	mrkats@naver.com	760-6983
동 구	(22571)인천.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송림도서관 <교육지원과>	최은주	770-6106	choiej173710@korea.kr	760-5140
미추홀구	(22218)인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제3청사 미추홀구청 <시민공동체과>	진장희	728-6819	jinja0404@mail.go.kr	880-4862
연 수 구	(21940)인천 연수구 솔샘로 146 연수구청 <연수청학도서관>	손민경	749-8262	sonmky17@korea.kr	749-8279
남 동 구	(21666)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611번길15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하연희	453-6434	store20@korea.kr	453-5928
부 평 구	(21354)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문화관광과>	이정선	509-6432	vitalgirl@korea.kr	509-7620
계 양 구	(21067)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평생교육과>	박지연	450-5836	jazzdiary@korea.kr	551-5717
서 구	(22726)인천 서구 서곶로 299 제2청사 서구청 <교육혁신과>	천경수	560-5756	incheonin12@korea.kr	560-2716

[붙임 1-서점용]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등록 신청서

서점명		매장 전화번호		매장 F A X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사업자 등록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매장주소	인천광역시				
매장위치	<input type="checkbox"/> 주택가 <input type="checkbox"/> 시내 <input type="checkbox"/> 상가(APT상가) <input type="checkbox"/> 학교 앞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역				
개점월	년	월	종사자수 (대표자포함)	명	영업시간 오전()시 ~ 오후()시
매장형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바닥면적()m ²	<input type="checkbox"/> 임대	판매형태		<input type="checkbox"/> 소매 <input type="checkbox"/> 총판 <input type="checkbox"/> 도/소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매출비중	<input type="checkbox"/> 도서()% <input type="checkbox"/> 문구 및 팬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취급도서	<input type="checkbox"/> 일반도서 <input type="checkbox"/> 아동도서 <input type="checkbox"/> 수험서 및 학습참고서 <input type="checkbox"/> 잡지류 <input type="checkbox"/> 외서 및 기타				
P O S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 : 설치수량()대, 설치년도()년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나라장터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구비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수조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점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붙임 2-서점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23년 지역서점 전수조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본인은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참여에 앞서, 아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동의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인천광역시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항목 : 서점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 등록번호, 매장주소, 매장위치, 개점 월, 종사자수, 매장형태, 매출비중, POS 사용여부,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여부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지역서점 전수조사를 통한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홍보자료 발간·배포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이용목적 : 2023년 지역서점 전수조사 자료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전수조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붙임 3-군구용]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전수조사표

(2023. 6. 30. 기준)

관련 부서	소관부서	0 0 구 0 0 0 과	과 장	0 0 0	440-0000	관리 번호	1-1
			0 0 팀 장	0 0 0	440-0000		
			담 당 자	0 0 0	440-0000		
사업명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전수조사						
지역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점명 : ○ 주소지 : ○ 사업자 : ○ 연락처 : 						
확인사항	○ 신청서 상 기재 사항 확인					이상 유 · 무	
	○ 사업자등록증 상 서적으로 등록된 서점					사업자등록번호	
	○ 외부에 서점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서점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일치)					사진첨부	
	○ 인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경영 중인 서점					방문매장 판매형태 (소매,도/소매,총판,기타) 보유도서량 : 권	
	○ 현장판매 매출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신용카드명세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첨부(기타서류 첨부)	
	○ 기존 지역서점 조사 참여 여부					ex) 2020, 2021 참여	
	○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여부					나라장터	
위 치 도				간 판 사 진			

[붙임 4-군구용]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현황

○ 총괄표

(2023. 6. 30.기준)

구분	계	강화	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2023년											
2022년	95	8	-	8	10	6	9	17	15	6	16
신규											
폐점 (미신고)											

○ 세부내역

연 번	군·구 명	서점 현황							대표자		주요 매출원	전수 조사 결과
		서점명	전화번호	고용 인원	운영 기간	매장			보유 도량	성명		
						총 면적	순수 서점	문구				
	강화군											
	옹진군											
	중 구											
	동 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인천광역시공고제2023-94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1) 업 체 명 : (주)한길자연환경
- 2) 대 표 자 : 강진무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서로 44, 4층
-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66호
- 6) 등 록 일 자 : 2023. 3.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변경 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00-0- 인천광역시 -123	대한민군6.25참전 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	대표자	고용희	강용희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95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 단체명 :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변경내역			변경일	주관부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4-0- 인천광역시- 16호 (2014.4.23.)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자	이찬영	최 환	2023.3.31.	공정사회 경제과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39호

「인천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조치를 하도록 함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참조 : 시민봉사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종합민원실 1층 1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수경(전화번호 032-440-2582, 팩스번호 032-440-2459, 전자메일 soss1208@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인천광역시에규 제 호

인천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하거나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을 포함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 라. 영상기록의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하거나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음성의 녹음 및

음성기록의 파일 보안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한다.
5.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7.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부서에서 지정한 정보처리 시스템을 말한다.
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위법행위”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과 위협·폭행 또는 민원 처리 부서의 기물파손 행위를 말한다.

제3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위법 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한 상황으로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사용해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민원인에게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미리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미리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의 전송·저장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③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녹음)제목, 녹화(녹음)일, 녹화(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영상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반납 시 이행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를 즉시 제6조에 따른 입고·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확인
3.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제5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제6조(관리책임자 및 입고·출고 담당자)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관리책임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부서의 장

2. 부 관리책임자: 시스템 관리자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고·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스템 관리자를 입고·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입고·출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기록 장비 입고·출고 현황 대장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음성기록 장비 입고·출고 현황 대장을 작성하여 입고·출고를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고·출고 내용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별지 제3호서식의 영상기록 장비 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음성기록 장비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부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 보안관리) 관리책임자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법적조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를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자 보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증거물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교육) ①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1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은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

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23-41호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구 표기순서를 반영하여 통·리장을 이·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합회의 정의, 지원사항 및 예우에 관한 관련 근거 등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리장 명칭을 이·통장으로 변경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연합회 및 연합회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적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마.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을 따라야 함으로 삭제함.
(안 제5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자치행정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2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은지(전화번호 032-440-2436, 팩스번호 032-440-8644, 전자메일 songdo2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으로 있는 이장·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
2. 연합회원의 역할에 대한 의식제고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소양교육
3. 연합회원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
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우)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
2. 그 밖에 연합회 및 연합회원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3-43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글로벌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글로벌도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라. 글로벌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글로벌도시기획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성현 주무관(☎ 032-440-3467, fax 032-440-8624, 전자메일 csh210@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정책 수립 및 지원)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구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도시 구성 정책의 기본방향
2. 글로벌도시 구성 정책의 목표 및 전략
3. 글로벌도시 구성 정책의 추진 체계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 2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시행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2. 외국인·재외국민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3.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구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글로벌도시 추진을 위한 부서의 자문 요청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하의 자문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금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 신산업 및 창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항공산업 및 항만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자문단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해당 안건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자문단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단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단의 자문의견으로 확정한다.

③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자문단은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자문단의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별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분과위원회별로 분과위원장 1명을 임명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정한다.

제17조(간사) 자문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글로벌도시 조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

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특정 안전에 대하여 자료수집을 하고 자문의견서를 작성하는 위촉위원에게는 건당 100,000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원 1명당 동일 안전과 관련하여 최대 3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 중 최초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 중 최초 시행계획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 조문내용 :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2. 외국인·재외국민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
 3.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한 유관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글로벌도시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글로벌도시 구성 사업 실시 기간
- 추계내용 :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기업·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 외국인·재외국민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 4,070백만원

연도별	사업내용	예산액(백만원)
합 계		4,070
2023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2024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2025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2026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2027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

※ 세부사업내용

1) 주한외교대사 초청행사 : 50,000천원

- 초청대상 : 주한외교대사
- 행사내용 : 세계 각국 정·관계를 대표하는 주한 외교대사를 초청하여 ‘뉴 홍콩시티 프로젝트’를 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네트워크 구축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10백만원), 홍보비(20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 등

2) 주한상공회의소 초청행사 : 40,000천원

- 초청대상 : 주한상공회의소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 행사내용 : 주한상공회의소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도모
- 산출내역 : 행사운영비(5백만원), 홍보비(15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 등

3) 재외동포 대륙별 대표 초청행사 : 724,000천원

- 초청대상 : 50명(북미·중남미 재외동포 대표단)
- 행사내용 : 재외동포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킹 확대 및 뉴홍콩시티 투자유치 가시화
- 산출내역 : 항공료(625백만원), 행사운영비(16백만원) 홍보비(15백만원), 임차료(20백만원), 숙박비(48백만원)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자체재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다음장 참고

4. 작성자 : 글로벌도시국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박 경 용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입							
	소계						
세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814,000	814,000	814,000	814,000	814,000	4,070,000
	소계	814,000	814,000	814,000	814,000	814,000	4,070,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814,000	814,000	814,000	814,000	814,000	4,070,000
	일반회계	814,000	814,000	814,000	814,000	814,000	4,07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4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기능이 유사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와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제5호)
- 나. 맞춤법 수정사항(안 제4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에서 제3항)
- 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2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노동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경은 주무관(전화번호: 032-440-4406, 팩스번호: 032-440-8659, 전자메일: eunlee7@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5.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나. 관계 법령 1부.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이”를 ““시장”이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로, “범위”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중 “근로자 권리”를 “근로자 권리”로, ““전담기관”라”를 ““전담기관”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력 을”을 “인력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설치·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u>"시장"</u>이라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u>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u>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u>범위</u>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0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근로복지기본법</u>」 제3<u>조</u>-----</p> <p>----- <u>범위</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u>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u>」 제<u>19조</u> 각 호에 관한 사항</p>

5. (생략)

② ~ ④(생략)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시장은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근로자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 관련 전문 인력 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④(현행과 같음)

제16조(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
-----근로자 권리-----

----- “전담기관”
이라-----

② -----

----- 인력을 -----.

③ -----

----- 설치· 운영-----.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8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감정노동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분야 등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3. 인천시 노동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여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업무)

1.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자문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가이드라인 심의·자문
4.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
5. 감정노동 종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제20조(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을 위해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장 권오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3-115호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2조)

-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 삭제

3.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 우편번호 및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전화)032-420-8283, 팩스)032-420-8312
 - E-mail: prio76@ice.go.kr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5. 개정조례안: [붙임2]

[붙임2]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칭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략)</p> <p>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p> <p>5. (생략)</p>	<p>제2조(기능) -----</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3-11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요건 및 규모의 구체화
- 한 회계연도의 기준이 모호하여 전년도 말 기준적립 총액으로 기준 명확화

- 용도의 구체적 사업 삭제

나. 회계관계공무원(안 제6조)

-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복지담당서기관에서 예산담당서기관으로 변경
- 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신설

3.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 우편번호 및 주소: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전화)032-420-8283, 팩스)032-420-8312
 - E-mail: prio76@ice.go.kr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5. 개정조례안: [붙임2]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제4조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적립 총액”을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 제목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총무과장, 정보지원과장

2. 위촉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중전의 제7조) 제1항제2호 중 “예산복지담당서기관”을 “예산담당서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p> <p>1. <u>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u></p> <p><신설></p> <p>2. (생략)</p> <p>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u>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u></p> <p>③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p>	<p>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u></p> <p>가. <u>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u></p> <p>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u>전입금</u></p> <p>다. <u>자체수입</u></p> <p>2. <u>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 ----- <u>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u></p> <p>③-----</p>

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써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5.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 시설사업, 교육정책사업, 학생 복지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6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생략)

 -----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 심의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위원: 총무과장, 정보지원과장
2. 위촉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지역

<신 설>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 설>

<신 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
 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생략)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복지담당서기관

3. (생략)

② (생략)

제8조 (생략)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
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예산담당
서기관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3-117호

「인천광역시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3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안 제3조)

나. 기금 조성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정보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정보지원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7620, 팩스)032-420-7647
 - E-mail: psm0123@ice.go.kr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5. 제정 조례안: [붙임 2]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정보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학교 내 유·무선망 구축 및 개선
2.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학생 디지털기기 보급 및 유지관리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

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3-11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의 설치(안 제3조)
-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안 제4조)
- 다.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 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마.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6502, 팩스)032-420-6536
 - E-mail: js1507@korea.kr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붙임1>

5. 제정조례안 : <붙임2>

< 붙임2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의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조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2. “건립”이란 신축, 증·개축, 이전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3. (가칭)인천교육박물관
4. (가칭)제2유아교육진흥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행정기관

제4조(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제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